

서스틴베스트 윤리규정

1 임직원 기본 윤리

- 1.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1.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- 1.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,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.
- 1.4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,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1.5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 또는 제3자에게 유·무형의 폭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.
- 1.6 구성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구성원 또는 제3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, 차별적인 위협과 조롱 또는 모욕행위 등 부당한 괴롭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.
- 1.7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1.8 구성원들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비롯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- 1.9 구성원들은 성적차별이 없는 업무환경을 만든다

2 정보보호 윤리

- 2.1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.
- 2.2 법인의 기밀·정보 및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.
- 2.3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지 아니한다.
- 2.4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.
- 2.5 구성원들은 업무 처리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, 자신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

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
2021년 5월 18일

(주)서스틴베스트 직인생략